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금지 >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00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금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7. 16.
3. 회 부 일: 2025.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나 관계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8 및 제55조).

Ⅲ. 검토의견

1.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금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8 및 제55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생략)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 <u>방해</u> 하거나 <u>기피</u>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 <u>방해 또는 기피</u>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서는-----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② (생략)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	③ ----- ----- ----- -----

-----, <단서 삭제>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

1. ~ 3. (현행과 같음)
4.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5.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
-----방해 또

<u>하거나 기피한 자</u>	<u>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의견

○ 현행법상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이 신고 접수된 경우 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관계자·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현장조사·감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¹⁾.

-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나 관계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²⁾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2) “법정 증인 섰던 ‘국대’ 선수는 왜 눈물 흘렸나...‘무고 혐의’ 고소당한 코치의 4년”, JTBC, 2024년 6월 29일.
“병사 돈 뜯은 감독, 수사 시작되자 “없다고 해라””, SBS, 2023년 3월 5일
“‘최숙현 사건’ 거짓 보고...사망 뒤에도 계속 은폐”, SBS, 2020년 8월 8일

- 이에 개정안은 ①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②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본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은폐해도 제재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며, ③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에 있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조사에 있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현행 법령에서도 이미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거짓 진술을 기존의 조사 방해에 포함하여 간주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실제 법 적용과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거짓 진술을 별도의 명확한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른 법령에서도 거짓으로 신고, 자료제출, 진술 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거짓 진술 등에 대한 유사 입법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예술인권리보장법 (법률 제18466호)	•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41조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20558호)	•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63조제1항)
민사소송법 (법률 제19516호)	•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제370조제1항) -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국세기본법 (법률 제20774호)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제88조제1항) -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 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5697호)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45조 관련)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규정

○ 다만, 개정안 제18조의6제3항 단서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의 원칙³⁾을 명시한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 위반이 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헌법상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은 형사 분야에 한정되어 규정되어 있지만, 판례도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겐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3)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고 판시⁴⁾한바 있음⁵⁾.

문 의 처
02)6788-5375

4) 대법원 2015도3136 판결, 2015년 5월 28일

5)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도 동일한 의견 제시